



금융분쟁 소멸시효 중단 관련 최근 법개정 사항 검토

양승현 연구위원

지난 4월 17일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됨. 이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단기간에 완성되어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금융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용이하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개정일 이후 신청되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해당 분쟁조정이 취하 또는 각하 이외의 사유로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나아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규정이 적용됨.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동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금융분쟁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됨

- 2016년 9월에 있었던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판결을 배경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여러 법률안이 발의¹⁾됨
 - 2016년 5월 대법원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²⁾한 후, 같은 해 9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³⁾
 -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보험소비자가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구제를

1) 보험금 지급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833호)하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888호 외 다수), 설명의무 미 이행 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5111호)하는 법률안 등임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3)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17년 12월 12일 박용진 의원 등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010788호) 및 동 개정안을 함께 발의함⁴⁾
 - 관련 법률안 중 현재까지 동 개정안만이 국회를 통과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설 규정

-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5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제53조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부칙 <법률 제15613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험 등 금융 관련 분쟁에 관해서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⁵⁾되고, 중단된 시효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됨

- 단,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1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시효임박 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금융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동 개정안의 내용은 원래 2016년 7월 21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017호)의 일부로 발의되었으나, 당시 분쟁조정 관련 사항은 법체계상 일반법인 상법보다 분쟁기구의 근거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의견이 있었음

5)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바, 소멸시효의 중단(中斷)은 권리자가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전까지 시효기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임. 한편, 유사한 제도인 소멸시효 정지(停止)는 시효 완성에 대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소멸 시까지 시효완성시점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 건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시행일(2018. 4. 17) 현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애초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한 유사 타법 개정 사례⁶⁾에서 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사건으로 제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개정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음

■ 나아가 부칙 제2조 문언상 적용대상을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신청되었다가 이미 종료된 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이란 문구를 좁게 해석하여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건은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분쟁조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보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임
- 문리해석 및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은 넓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즉,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분쟁조정 건이라도 취하 또는 각하 외의 사유로 종료되었고 원래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시행일 이후라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⁷⁾임

■ 동 개정으로 기존 및 향후 금융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동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kiri](#)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6년 3월 29일부로 제48조의6 제4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를 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4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소비자분쟁법 역시 2016년 3월 29일부로 제68조의3을 신설하여 소비자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를 규정하면서 역시 부칙으로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7)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올해 3월 경 조정불성립 종료된 건의 경우, 원래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올해 5월이었다면, 동 개정으로 2021년 3월 경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함